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41호
2022. 6. 10.(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38호) 1

고 시(2)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2-44호) 5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45호) 6

공 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모집 공고(공고 제2022-611호) 7
-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라운영 협약체결 공고(공고 제2022-614호) ... 11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615호) ... 12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공로연수 공무원:”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공무원:”으로, “공로연수 시작일”을 “퇴직준비교육 시작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제4조 관련)

1. 행정역량평가 우수 부서 표창

분 야	내 용	시상금 또는 부상
국비·시비 확보	25억원 이상	5,000천원
	20억원~25억원	4,500천원
	15억원~20억원	4,000천원
	10억원~15억원	3,500천원
	7억원~10억원	3,000천원
	5억원~7억원	2,500천원
	3억원~5억원	2,000천원
	1억원~3억원	1,500천원
	5천만원~1억원	1,000천원
	1천만원~5천만원	500천원
상사업비 확보	3억원 이상	5,000천원
	2억5천만원~3억원	4,500천원
	2억원~2억5천만원	4,000천원
	1억5천만원~2억원	3,500천원
	1억원~1억5천만원	3,000천원
	7천만원~1억원	2,500천원
	5천만원~7천만원	2,000천원
	3천만원~5천만원	1,500천원
	1천만원~3천만원	1,000천원
	1백만원~1천만원	500천원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1,000천원
	국무총리 표창	700천원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500천원
	유관 민간기관 표창	500천원
비공모 우수사업	S등급	1,000천원
	A등급	700천원
	B등급	500천원

※ 일상적인 국비·시비 보조사업 등 제외

2. 그 밖의 포상

포 상 명	인 원	포상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명	12월	공무원	2,000천원	
으뜸 공무원	4명	4월, 7월, 10월, 12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공무원	1명	5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 또는 퇴직준비 교육 공무원	미정	퇴직일 또는 퇴직준비교육 시작일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배우자	미정	퇴직 또는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포상 시	공무원의 배우자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상	연도별 계획에 따름	수시	공무원, 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가.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역량평가 우수 부서 표창에 따른 시상금 기준을 상향 및 세분화하고, 유관 민관기관 표창·비공모 우수사업 표창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 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공로연수” 명칭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함(제3조제2항제5호).
- 나.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을 정비함(별표).
- 1) 행정역량평가 우수 부서 표창 시 ‘국·시비’, ‘상사업비’ 분야의 기준금액 구간 상향 및 세분화
 - 2) ‘기관표창’ 분야의 시상금 상향 및 유관 민관기관 표창 신설
 - 3) ‘비공모 우수사업’으로 표창 분야의 명칭 변경 및 시상금 세분화
 - 4) 그 밖의 포상 중 ‘모범공무원’ 분야 삭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및 현황

가. 사업명: 장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나. 위치: 장동 337-2번지 일원

다. 사업량: 214필지 / 176,323.0m²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3. 지형도면: 따로 붙임(계재 생략)

4.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337-9	오정로63번길 15	2022. 6. 10.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199-6	대덕대로1605번길 16-18	2022. 6. 10.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6,0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61-31	덕암로187번길 6	2022. 6. 10.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61-32	덕암로125번안길 123	2022. 6. 10.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모집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
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모집기간: 2022. 6. 13.(월) ~ 2022. 6. 24.(금) / 12일간
- 모집인원: 50명 이내
 -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동별 2인 이상
 -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주민”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 타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
- 분과위원회별 해당부서 내역

분과명	인원	해당 부서
계	50명	30개 부서
행정지원	12	기획홍보실, 감사실,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동),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합문화센터, 의회사무과
공동체복지	13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기후경제	13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에너지과학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
도시안전	12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5. 주요기능

- 가.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 다.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

6. 위원선정

- 가. 신청자별 예산참여 희망분과 및 지역별 인원 안배로 선정
- 나. 신청인원 미달 시 단체 추천 등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위촉
- 다. 신청인원 초과 시 신규여부, 지역별, 분과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 선정
 - 1) 추천자, 신규자, 연소자, 성별 안배 등 종합 반영
 - 2) 사회적 약자(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등)의 참여를 위한 위촉 우대
 - ※ 허위서류 제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7. 제출서식 및 제출방법(접수처)

- 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별지 제1호] 서식
- 나. 동 지역회의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별지 제2호] 서식
- 다. 제출방법

- 1) 방문제출: 대덕구청(공동체과) , 대덕구 동 행정복지센터 / 근무시간 내
- 2) 우편제출: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3층 공동체과 주민참여예산제 담당자 앞 / 우편 제출 후 ☎ 608-6617 전화 요망
- 3) FAX 제출: 공동체과, 팩스번호(608-3830) 전송 후, ☎ 608-6617 전화 요망

8. 신청서식은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의 (주민참여포털 - 주민참여 커뮤니티-자료실) 또는 대덕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공동체과(☎608-6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가입 추천서

(신규 기존)

기존)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연 락 처 (E-mail)	자택		E -mail	
	H·P			
추 천 단 체	동 지역회의 추천()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단체명		연락처	
	대표자			
참 여 회 망 분과위원회	① 행정지원 ② 공동체복지 ③ 기후경제 ④ 도시안전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참여이력 관리, 통계 활용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거소), 직장명,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일부정보(성명 등)의 경우 참여이력 관리를 위해 영구 보유이용
-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가입신청이 거부됩니다.
-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위와 같이 대덕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가입을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추천단체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약일: 2022년 6월 7일
2. 위탁기간: 2022년 6년 18일 ~ 2025년 6월 17일
3. 위탁범위: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4. 수탁기관

수탁기관	대표자	주 소	비고
대덕구체육회	육은수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목상동)	

5.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체육시설	재질	부대시설
송촌생활체육공원	선비마을로 200 (법동)	배드민턴장 3면	우레탄	-
		족구장 1면	우레탄	-
		게이트볼장 2면	인조잔디/천연잔디	-
		농구장 1면	우레탄	-
		X게임장 1면	우레탄	-
		풋살경기장 1면	인조잔디	락커룸, 조명
	선비마을로 110(송촌동)	실외테니스장 6면	인조잔디	락커룸, 조명
을미기공원	대덕대로1448번길 120(신일동)	실외테니스장 4면	인조잔디	락커룸, 조명
		족구장 1면	인조잔디	-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2. 6. 10. ~ 2022. 6. 24.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부과금액	비고
박○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5,700,310원	

6. 공시송달내용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2. 6.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담당 [☎ 042-608-6383].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②신분자격의 박탈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